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7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이종배·추경호·조경태

이종성 · 김정재 · 최승재

전봉민 · 김도읍 · 태영호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32조 및 제40조).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의6"을 "제4조의7"로 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의 제목 중 "안전관리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중 "제4조의3제2호"를 "제4조의3"으로하며,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 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의4제3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	
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u>제4조</u>	<u>제4조</u>
<u>의6</u> 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u> 의7</u>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	
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
	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
	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u>한다.</u>
제4조의3(체육시설 <u>안전관리점검</u>	제4조의4(체육시설 <u>안전점검</u> 등
등의 위임·위탁) (생 략)	의 위임·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체육시설업자,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③(생략)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1. 2. (생략)
- 3. <u>제4조의4</u>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

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	-
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_
<u>제4조의3</u>	_
	_
	_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u>.</u>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4조의6</u>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	_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 시스템 운영)	_
②·③ (현행과 같음) <u>제4조의6</u>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u>제4조의4제</u> 항	_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제4조의4제 항 1.·2. (현행과 같음)	_
②·③ (현행과 같음) <u>제4조의6</u>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u>제4조의4제</u> 항	_

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생 략)

<u>제4조의6(</u>체육시설 안전관리 포 상) (생 략)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 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략)

③ (생 략)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 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 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
상) (현행 제4조의6과 같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제4조의5제3항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
1. <u>제4조의5제3항</u>

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 ----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 6. (생 략) 2. ~ ② (생 략) ② (형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